

2005년 11월 23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5. 11. 22 배포
- ▶ 총 3쪽 (사진없음)

보 도 자 료

- ▶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사무관
T E L : 503-9750
E-MAIL : rhy001@molab.go.kr
F A X : 502-271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고용보험, 근로자·사업주 지원 크게 늘어나

- 비정규직·고령자 등 우대, 사업주 전문인력활용 지원
지역특화사업 지원, 실업급여 한도액 인상 등 -

- 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, 일자리 부족,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('05.11.16)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'05.11.22 입법예고하였다.

※ 고용보험법 주요개정내용 :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·운영, 그 지원대상과 사업범위 확대

【 비정규직·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】

- 계약직,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할 계획이다.
- 훈련비용에 더하여 임금의 일부(최저임금한도)를 추가지원하고,
-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.

※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(일반근로자 80%),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%(일반근로자 50%) 지원 검토중

- 종래 계약직 등에 대한 사업주의 훈련 기피 요인인 **업무 공백 및 비용부담이 완화되도록**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고령자의 **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**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**임금파크제보전수당을 지급**(54세 이상자에게 최대 6년간 지급)하는 제도를 3년간 **한시적으로 시행**하고
- 연공급 임금체계나 직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기업이 기존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**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**하며
- 고령자, 여성, 장애인의 작업편의를 위해 **작업공정 및 사무 환경 등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·개선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**할 계획이다.

【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】

- 종래에는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**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**하였고
- 전직지원장려금의 경우 모든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고용조정 근로자 이외에 **이직예정인 근로자까지 확대** 하고, **소요비용의 3/4(종전 2/3)까지 지원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 지역에 특화된 **고용안정·능력개발사업을 개발·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**할 계획이다.
- 동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종래 기업 일변도의 자원체계에서 나아가 **지역 및 수요자에 밀착된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전달경로를 확대**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강화 】

- 실업(구직)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**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** 하고,
- '95.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7만원으로 유지되던 **구직급여의 기초임금일액상한을 8만원(14.3%)으로 인상할** 예정이다.(실 수령액은 8만원의 50%인 4만원)
 - ※ 상한액 변화 : '96.7월 7만원 → '99.7월 6만원 → '01.1월 7만원
 - ※ '01 ~ '05년 소비자물가지수 13.2% 증가, 실질 GDP성장율 18.5% 증가, 임금 인상률 39% 증가

【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혜택 】

- 양극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**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범위**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 하되, 직업훈련 수요를 감안 **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** 하기로 하였다.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고,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하면 된다.
-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**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**